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①

I.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가슴기 살균제 피해,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인 김용균씨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매년 2,000여명 발생 등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2020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공포되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50명 미만 사업(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II.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제1장 총칙



이 중 주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기술사/건설기계기술사
중부재해예방(주) 전문위원

제1조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 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p>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p> <p>▶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p> <p>▶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p>

Special Contribution

<p>제2조 (용어의 정의)</p>	<p>발생한 재해로 각목에 해당하는 재해</p>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p> <p>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p> <p>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p>▶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p> <p>▶경영책임자 등 :</p> <p>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p> <p>▶종사자</p> <p>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3. 수급인과 수급인과 1., 2.의 관계에 있는 자</p>
-------------------------	--

제2장 중대산업재해

<p>제3조 (적용범위)</p>	<p>▶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주(경영책임자) (상시근로자 5명 이하 미만 제외)</p>
<p>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p>	<p>▶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p> <p>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p>	<p>▶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4조의 조치 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p>
<p>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p>	<p>①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하여 사망 발생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p> <p>②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p>
<p>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p>	<p>▶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 해당하는 위반 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p> <p>① 제6조 제1항의 경우(사망) : 50억원 이하의 벌금</p> <p>② 제6조 제2항의 경우(부상·질병) : 10억원 이하의 벌금</p>
<p>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p>	<p>▶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p> <p>※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p>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제11조 참조)

제4장 보칙 (제12조~제16조 참조)

부칙

<p>제1조 (시행일)</p>	<p>▶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년 1월 27일 시행)</p> <p>※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024년 1월 27일)</p>
----------------------	--

III.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법안명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전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사업장) (5명 미만 제외)
중대재해기준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처벌대상	행위책임자 중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개인사업자 -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의 대표이사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현업공무원은 제외)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73개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1. 필요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수립 및 이행조치 2.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의 세부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임
사망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법인)	법인(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사망 : 10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시기	1981년부터 시행 중	공포 1년 후 시행(50인 이상) (2022년 1월 27일) 5~50인 미만 3년 유예(2024년 1월 27일) 건설업 : 50억 미만 3년 유예(2024년 1월 27일)

IV. 사업장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 및 시행(2022년 1월 27일)으로 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 법은 단순히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 및 사업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및 공포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사업장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철저히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를 하는 것이며, 향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다.

향후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 산업안전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는데 노, 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